

#9. 스타트업 투자 세제혜택 '조세특례제한법'(3)

-회수 시점에서 개인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-

안녕하세요. 김지호 세무사입니다.

지난 연구자료에서는 '투자 시점에서 개인투자자와 법인투자자의 세제혜택'에 대해 다루었습니다. 이번에는 **'회수** 시점에서 개인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'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회수 시점에서 개인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

비상장기업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지분을 회수하는 방법은 크게 i) 다른 투자자에게 구주양도 ii) M&A iii) IPO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IPO 의 경우 피투자기업이 상장기업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. 그 외 지분 회수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.

비과세 요건 - 출자 대상
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타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(조특법 제 14 조 제1항).

 ⑦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②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

④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(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경우를 포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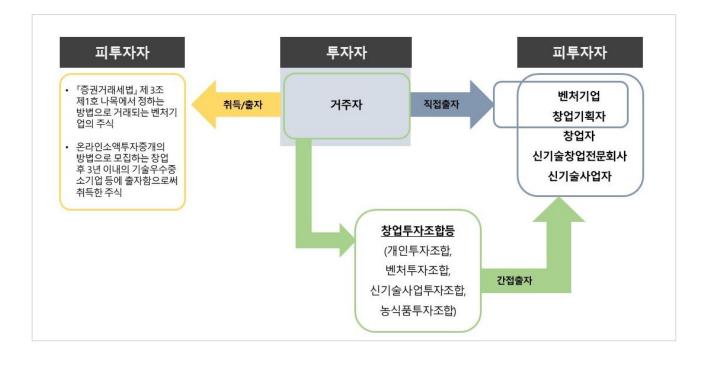
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

⑥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

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

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,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(조특법 제 14조 제 1 항 및 제 13조 2 항).

⑤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



있습니다.

비과세 요건 - 출자 방법

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,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과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으로 요약할 수

또는 출자지분

정)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

출자지분 ⑦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(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





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. 다만, 증자대금의 30%를 한도로 합니다.

간접투자방식 특례

직접투자방식과 달리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소득을 계산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현행 세법에서는 투자조합이라는 단체의 세법상 독립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, 도관이론에 근거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<u>벤처투자조합 등은 조합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'도관'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분을</u> <u>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조합원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</u>. 다만, 벤처투자조합 등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등의 조합 자체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, 이자소득, 양도소득은 해당 경비들을 공제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(조특법 제 14조 제 6 항)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세움 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©2023 SEUMTax

김지호 세무사 CTA jeeho.kim@seumlaw.com